

세션 I

주제발표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홍 성 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홍 성 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I. 들어가며

혐오표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들어 몇몇 문헌들에 의해¹⁾ 미국의 혐오표현 문제가 소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운동이나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2013년 이후부터이다. 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게시판(이하 “일베”)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5.18 관련 왜곡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베 폐쇄나 종편 제재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언론에서도 혐오표현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²⁾ 그 이후에 시민사회와 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관련 입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표현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입법안들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각종 쟁점들을 정리하고, 혐오표현의 사례와 적절한 규제방안을, 특히 사이버상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 이재진 (1999). 혐오언론(hate speech)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언론학보>, 19권, 99-125면; 이재진 (2000).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6호, 104-146면; 조소영 (2002).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공법연구>, 제30권 제4호, 124-130면; 조소영 (2004).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 대학내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권, 91-111면; 심경수 (2007). 증오언론과 십자가 조각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연구>, 제18권 1호, 39-80면 등 참조.

2) 인권·시민사회의 대응 중에서는,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토론회>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민주노총교육원, 2013. 7. 18.)를 꼽을 수 있다.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쟁점³⁾

1. 혐오표현의 의의

국제사회의 논의와 시민사회·학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혐오표현(hate speech)’⁴⁾의 개념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혐오표현은 혐오를 표출하는 것인데, 혐오는 일시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이데올로기, 예컨대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자민족중심주의, 반유대주의, 백인우월주의, 성차별주의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혐오표현의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혐오감과 구분되며, 부정적 의견표시부터 시작해서 소수자를 모욕·조롱·위협하는 것,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대·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고취·선동하는 것 등이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된다. 셋째, 혐오표현은 표적집단인 소수자를 향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즉, 혐오표현은 선동(incitement)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일반청중들을 향해 ‘소수자를 차별하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법적 규제도 발달해있다. 국제적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찾을 수 있으며, 몇몇 개별국가들에서도 혐오표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⁵⁾

3) 이 장은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50호, 290-301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편의상 일일이 인용표시를 하지는 않았다.

4) 본고에서는 ‘혐오표현’이라고 통칭했다. ‘hate’를 차별적인 의견이나 신념부터 직접적인 선동까지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려면, ‘혐오’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증오’는 보다 격렬한 감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혐오의 감정”을 뜻하는 ‘hatred’의 번역어나 그런 격정적 상태에서의 범죄행위를 뜻하는 hate crime(증오범죄)의 번역어로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speech’는 의견이나 사상을 표출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출판, 유포, 예술, 상징물 게시 등)를 뜻하기 때문에, ‘언론’, ‘발언’, ‘언설’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5)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로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 미주지역의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그 외의 지역의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호주(일부 주) 등이 있다. Article 19 “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Policy Brief)”, 2013;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Hate Speech and Hate Crimes against LGBT Persons” 참조.

2. 혐오표현 규제 옹호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무엇보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해악에 주목한다.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한다는 지적도 있고,⁶⁾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자신감·자부심 상실, 자책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회심리학적·의학적인 근거도 제시된다.⁷⁾ 또한 편견과 혐오가 전염성이 강하고, 후대에 전승되기도 하며, 조직적 차원으로 확산된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혐오표현은 발화주체와 대상의 측면에서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에 비해) 파급효과 크고 광범위하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표적 집단(target group)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악의 범위가 소수자집단 전체로 확대되며, 청중들로 하여금 차별에 동참하게 만드는 선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표현은 차별행위와 폭력, 심지어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⁸⁾ 따라서 표현단계에서의 예방적·선제적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며,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혐오표현의 해악을 더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규범적으로는 혐오표현이 ‘인간존엄’, ‘평등’,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민주적 법치국가의 중요한 가치를 파괴한다는 점이 지적된다.⁹⁾ 인권·기본권이론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절대불가침은 아니며, UN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혐오표현도 가능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혐오표현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문제’인 이상, 혐오표현에 맞선 대항표현(counter-speech)이 시장에서 공정한

6) Waldron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4-5면. 홍성수·이소영 역 (2016 근간). <혐오표현의 해악>.

7) Dovidio et al. (2013).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in J. F. Dovidio et al. (ed). *The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3-28면 참조. 그 외에도 Ehrlich et al. (1995). The Traumatic Impact of Ethnoviolence. in Lederer and Delgado (ed). *The Price We Pay*. 62-79면 참조;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해악을 조사·연구한 것으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 (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보고서) 등 참조.

8) 대표적으로 Allpor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특히 14-15면 참조.

9) Farrior (1996). Molding the Matrix.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1), 3-6면 참조.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¹⁰⁾

3.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에서는 혐오표현이 부적절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소수자 ‘집단’이 해악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며, 그것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정인에게 해악을 끼쳤다면 민사구제로 해결하면 되고, 차별이나 폭력으로 나아갔을 때 형사처벌이나 민사구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뿐, ‘표현’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사 사회적 해악이 있다고 해도 표현 자체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해 그 해악을 치유하는 것이 규제 남용의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적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비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발화된 혐오표현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며, 소수자의 주체성 강화나 사회의 내성을 기르는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¹¹⁾

혐오표현에 대한 법규제가 과연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예컨대 ‘선동’만 처벌한다면, 선동조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심각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¹²⁾ 혐오주의자들은 표현방법을 바꿔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범망을 피해나갈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금지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법적 처벌에만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¹³⁾ 혐오표현이 ‘금지’되면 사회의 담론이 합법/불법표현으로 이분화되어 다양한 가치판단이 왜곡되고 다원적 해법들이 질식될 수 있으며, 혐오표현의 원인이 되는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을 도외시키고 혐오표현의 ‘발화자’ 처벌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¹⁴⁾

10) Nielsen (2012). Power in Public. in Maitra and McGowan (ed). *Speech & Harm*. 148-173면 참조.

11) Rosenfeld (2012).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Herz and Moln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282면; Baker (2012). Hate Speech.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73면 이하; Strossen (2012). Interview with Nadine Strossen.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387면; Walker (1994). *Hate Speech*. 162-163면; 이재승 (2010). <국가범죄>. 575-576면 참조.

12) Sorial (2015). Hate Speech and Distorted Communication. *Law and Philosophy* 34, 300-301면.

13) Weinstein (1999). *Hate Speech, Pornography, And Radical Attacks On Free Speech Doctrine*, 155-156면; Baker (2010). 앞의 글(“Autonomy and Hate Speech”), 150-151, 153면; Baker (2012). 앞의 글(“Hate Speech”), 75면 등 참조.

4. 소결 : 혐오표현 규제 of 정당성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국가가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발표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혐오표현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은 엄연한 현실이다.¹⁵⁾ 현실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맞받아치기(speaking back)’나 사상의 자유시장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개입’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적 규제는 혐오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공동체 차원의 상징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로 혐오와 차별을 몰아내는 조치로도 연결될 수 있고, 소수자집단에게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국가’의 ‘법’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점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도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상징적인 조치들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이 연방 차원의 혐오표현 금지법을 굳이 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혐오표현 단계를 넘어서는 차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혐오표현처벌법을 제외한 다양한 반강제적·자율적인 조치들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만약 우리가 그런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혐오표현금지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그렇게 ‘법적 강제 없이’ 맨 몸으로 이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혐오표현금지법을 반대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¹⁷⁾ 일단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단 하나의 선택지는 없다. 법적 규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각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조치들, 그리고 교육 등의 형성적 조치까지 모든 수단들이 적절히 배치될 때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형사범죄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형사범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차별금

14) 이것은 법(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의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홍성수 (2010).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38호, 218-220면; 홍성수 (2013). 제9장 법과 사회변동. 김명숙 외.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참조.

15) Delgado and Stefancic (1999). *Must We Defend Nazis?*. 3장 참조.

16) 홍성수 (2015. 8. 19.). ‘혐오할 자유’ 보장하는 미국? 몇모르는 소리!. <한겨레21> 제1075호 참조.

17)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의 홍성수 (2015). 301-319면 참조.

지법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분명하게 불법화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차원의 조치는 충분하며, 차별시정 외에 민사구제나 인터넷상의 여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III. 사이버 혐오표현의 사례와 증오선동

1. 주요 사례

1) 외국인/인종/종교적 혐오표현

“한국 내 서열순위가 불체자 > 한국인 인거 같습니다. 이게 다 KKK단 같은 인종청소주의자들이 없어서입니다.”¹⁸⁾

“외노 다문화 불법짱깨들 다 쫓아내라” (네이버 댓글)

“중소기업에 외노자 받지마라. 노동시장 외국하고 내수시장 망치고 치안악화된다. 다문화 결사반대!” (네이버 댓글)

2) 성소수자 혐오표현

“힘냅시다 화이팅! 동성애 성문화축제(퀴어문화축제) 물러가라! 호모좀비들과 향문폭도들에 맞써 진리를 위해 싸웁시다!” (네이버 블로그, 성다수자 인권위원회)

“한국에서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대사관에서는 동성애를 더욱 조장하는 행동을 한국에서 계속 하고 있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

3)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 부정 (호남 혐오)

“518폭도○○○들아 국민혈세 그만 처먹어라 유공자는 계엄군이 유공자지 ○○ 100명남

18)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사례 중 일부.

짓 뒀진 폭동인데 유공자가 몇천명이나 ○○”(일베)

“(5.18희생자 유족 사진을 게시하며)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 착불이요”(일베)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지만원 시스템클럽)

4) 여성혐오¹⁹⁾

“여자를 합법적으로 강간하는 방법: 친구 한명이랑 짜고 친구가 강간범 역할하고 여자 한명 잡아서 강간하는데 내가 우연히 등장해 말리는 척하면서 친구한테 맞는 시늉을 하면 그 여자는 자기 살길 찾아서 도망갈 것이다. 그럼 강간도 하고 빨간줄도 안그이고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명씩 역할 바꾸면서 즐기면 된다”(일베)

“요즘 김치녀들은 취집가면 직장 그만두고 오전에 스타벅스 가서 시댁욕하거나 남편자랑하거나 오후엔 요가 쳐가고 저녁엔 남편와도 밥할 줄 몰라서 라면 준다면서요? .. 그러니 하는 일이 맨날 설거지랑 흠서빙, 청소 이런거 하는거죠. ㅋㅋ”(네이버 댓글)

2. 혐오표현과 증오선동

현재 한국사회의 혐오표현은 대개 사이버상에서 공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실공간보다 더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수많은 사이버상의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단순히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의도적인 선동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가 혐오의 감정이나 차별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타인에게 차별과 폭력을 함께하자고 목적의식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다. 편의상 전자를 ‘혐오공표’로 후자를 ‘증오선동(incitement to hatred)’²⁰⁾이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차별·적의·폭력에 대한 “선동(incitement)”과 “고취·고무(advocacy)”를 혐오표현의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의 입법

19)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20)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138호, 199-201면. 이를 ‘차별선동(incitement to discrimination)’이라고 칭하는 견해[김지혜 (2015).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제64권 제9호, 40-43면]도 참조.

례에서도 이러한 구성요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덴마크나 뉴질랜드는 의도적인 혐오표현의 공표 정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²¹⁾ 좀 더 구체적으로 혐오공표와 증오선동을 구획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동 테스트(Incitement Test)>²²⁾

테스트 1: 맥락 (폭력, 차별에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 폭력 등 사회적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
- 제도화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 청중과 소수자집단이 서로 충돌한 역사가 있는지 여부
-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여부
- 미디어가 얼마나 다원적이고 공정한지 여부

테스트 2: 발화자

- 발화자의 공식적 지위
- 발화자의 권위와 영향력
- 특히 정치인, 공직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뤄져야 함

테스트 3: 의도

- 혐오를 고취하는 데 관여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 소수자집단을 특정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인지 여부
- 표현의 확대범위와 반복성

테스트 4: 내용

- 무엇을 고취하고 있는지 여부: 폭력 선동 여부 등
- 청중은 누구인가?
- 차별선동의 대상(소수자집단)은 누구인가?
- 표현의 자극성, 도발성, 직접성의 정도
- 배제사유: 예술적 표현, 종교적 표현, 학술적 의견, 공적 담론에 기여하는 의견인 경우
- 명백한 허위인지, 가치판단의 문제인지 여부

21) 영국 공공질서법 18(1): “위협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사용한 사람 또는 그러한 글을 전시한 사람은, a) 종교적 혐오를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b) 종교적 혐오가 선동될 수 있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범죄의 책임이 있다.”; 덴마크 형법 266b: “공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퍼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술하거나 또는 다른 공표를 한 모든 사람은, 그것에 의해 사람들의 집단이 그들의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적 배경, 믿음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위협받거나 조롱되거나 비하를 당한 경우,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처벌된다.”

테스트 5: 표현의 범위와 크기

- 제한된 청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 표현의 전파 수단
- 표현의 강도와 규모: 반복성, 전파 범위 등

테스트 6: 해악 발생의 가능성

- 차별, 폭력, 적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인지 여부
- 화자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 청자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 소수자집단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 있는지 여부

이 테스트는 대체로 혐오표현의 ‘해악’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제도화된 차별이 존재하고 청자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특별히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증오선동으로 구분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부주의하거나 의도성 없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악의적인 혐오표현을 규제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는 명백·현존 위협의 법칙 등 구체적인 해악이 외부에서 지각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에 해악이 더 크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일관되게 규율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위의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증오선동’만을 법적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혐오표현반대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등 엄격한 법치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법 영역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22) Article 19,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Policy Brief)”, 2012, 29-40면;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manating from the four regional expert workshops organised by OHCHR, in 2011, and adopted by experts in Rabat, Morocco on 5 October 2012, 22단락;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s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 26 September 2013, Fortieth Session, Supplement No. 18 (A/40/18), 15단락; Guyton (2013). Tweeting ‘Fire’ in a Crowded Theater: Distinguishing between Advocacy and Incitement in the Social Media World. *Mississippi Law Journal* 82(3). 725-728면; Mendel (2006).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Incitement to Genocide or Racial Hatred, for the UN Special Adviso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 44-61면; 김지혜 (2015). 앞의 글, 69-71면 등 참조.

하지만 이 때 혐오공표와 증오선동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동이 아니라 단순 의견표명만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는 더 해악적인 혐오공표가 법적 규율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 규율이 ‘증오선동’에만 한정될 경우, 전략적 행위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규율을 피할 수도 있다. 예컨대, III.1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혐오공표인지 증오선동인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동일한 표현을 누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가에 따라 혐오공표와 증오선동의 구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구성요건에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결정례와 판례에 의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법으로 모든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없으며, 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방법은 법뿐만이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법’의 취지와 효과를 적절한 수준에서 상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법적 규율 없는 자율적 해결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규제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규제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다면 강성형벌적 접근보다는 차별시정 등 좀 더 유연하고 부작용이 적은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²³⁾ 또한 법에 의해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 예컨대, 위에서 설명한 증오선동 정도로 - 적절히 좁힘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입법안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최초의 혐오표현금지법안²⁴⁾에서는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혐오표현금지법의 일종인 홀로코스트부정죄(law against Holocaust denial)의 한국판으로 도입된 5.18부정금지법²⁵⁾에서는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23) 이러한 주장으로 홍성수 (2015). 앞의 글, 특히 310면 이하 참조.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2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6. 6. 1.). 이외에도 이번 국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두 법안이 제출되었고(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7. 20.;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이전 국회에서도 5.18 외에 반인륜범죄 및 민주화운동, 일제 찬양 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3. 5. 27.);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2005. 8. 12.);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4. 8. 14.);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4. 6. 20.) 등.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 입법은 혐오표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념규정하고 있는 셈인데, 남용을 막기 위한 어떠한 입법적 조치 없이 사법적 해석에 너무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이런 조문들로는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껴가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²⁶⁾

IV.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규제 방안

1. 사이버 혐오표현의 문제

그동안 일반적인 혐오표현 문제와는 별도로 ‘사이버상의 혐오표현’ 문제가 독립적인 주제로 다뤄져왔으며,²⁷⁾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이버 혐오표현을 별도로 의제화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²⁸⁾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16년 6월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유럽에서 혐오표현 확산 금지를 위한 행동

26) 게다가, 홀로코스트 부정죄는 소수자(유대인) 차별과 대량학살의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된 것인데, 과연 한국에서의 일제찬양, 반인륜범죄, 민주화운동 부인 등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은 호남인 차별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제필요성을 주장하는 김재윤 (2015).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244면 참조.

27) Foxman and Wolf (2013). *Viral Hate: Containing Its Spread on the Internet*; Julian Baumrin (2011). Internet Hat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Revisited. *Rutgers Computer and Technology Law Journal*; LaShel (2011). Hate Speech in Cyberspace: Bitterness without Boundaries.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Burnap and Williams (2015). Cyber Hate Speech on Twitter: An Application of Machine Classification and Statistical Modeling for Policy and Decision Making. *Policy & Internet* 7(2), 223 - 242면 등 참조. 국내 문헌 중에서는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131-163면; 이재진 (2000).; 이상경 (20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197-239면;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 <페미니즘연구> 제15권 제2호, 279-317면 등 참조.

28) Gagliardone et al (2015).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유럽의 경우에는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2003.1.28; 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6: Combating the dissemination of racist, xenophobic and antisemitic material via the Internet, Adopted by ECRI on 15 December 2000; Blarcum (2005). Blarcum (2005). Internet Hate Speech: The European Framework and the Emerging American Haven.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62(2), 781-808면; Banks (2011). European Regulation of cross-border hate speech in cyberspace, The Limits of legisl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19(1), 1-13면; Keen and Georgesc (2016). *BOOKMARKS: A manual for combating hate speech online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of Europe. Revised edition. 2등 참조.

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기도 했다.²⁹⁾ 유럽이사회가 지원하는 혐오표현반대운동(No Hate Speech Movement) 캠페인에서도 사이버 혐오표현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아예 온라인혐오표현(Hate Speech Online)을 사이버혐오(Cyberhate)³⁰⁾라고 개념화하기도 한다. 유태인 혐오에 반대하는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에서는 아예 사이버 혐오를 “반유대주의적인, 인종차별적인, 편견적인, 극단주의의 또는 테러리스트의 메시지 또는 정보를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퍼뜨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기술로 인터넷(웹사이트, SNS, Web 2.0 사용자가 생산한 내용, 데이트 사이트, 블로그, 온라인게임, 인스턴트 메시지, 이메일 등)과 기타 컴퓨터와 휴대폰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을 언급하고 있다.³¹⁾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사이버 혐오표현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사이버 혐오표현의 특수성 때문이다. 사이버 혐오표현은 단순히 특이해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영역이며, 더 나아가 혐오표현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사이버 혐오표현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며, 출판물처럼 영구히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혐오표현 규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자인 월드론은 혐오표현은 “정상적인 지위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명예 또는 시민적 존엄의 기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인 간에 말로 하는 혐오표현(slander)보다는 문자나 방송에 의한 혐오표현(libel)이 문제가 되는 해악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³²⁾ 혐오표현이 지속적으로 게시됨으로써, 소수자에게 “너희들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아니다”, “차별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하는 것이 혐오표현의 핵심적인 해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에서 문자나 방송뿐만 아니라 로고, 마스코트, 연방기, 기념물(대표적으로는 나치문양) 등의 게시도 중대한 해악을 낳게 되는 것이며, 사이버 혐오표현도 그런 ‘지속성’의 차원에서 더욱 특별한 해악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혐오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생각이 확산되고 강화되는 것, 소위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는 사이버공간에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된다.³³⁾ 실제로 해외에서 사이버공간은 혐오집단

29)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URL: http://ec.europa.eu/justice/fundamental-rights/files/hate_speech_code_of_conduct_en.pdf

30) Council of Europe (2012). *Mapping study on projects against hate speech online*. 9면 참조.

31) ADL (2010). *From Responding to Cyberhate, Toolkit for Action*. 1면.

32) 앞의 Waldron (2012). 제3장 참조.

33) 선스타인 (2011).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선스타인 (2009). <루머: 인터넷시대에 던지는 新문명비판> 참조.

들의 주무대이며, 한국에서도 혐오표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문제되면서부터였다. 일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는 혐오의 감정이 커뮤니티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사이버공간은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기에도 적합한 공간이기도 하다.³⁴⁾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규정하면서,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³⁵⁾ 앞에서 언급한 ‘대항표현’에 관한 논의를 적용하자면, 자력화한 소수자가 혐오표현에 ‘맞받아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 역시 사이버공간인 것이다.³⁶⁾

2. 사이버 혐오표현의 규제 문제

1) 인터넷 자율규제와 사이버 혐오표현 규제

위에서 언급한 사이버 공간의 개방적 · 참여적 특성은, 사이버 공간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과 연동되면서, ‘규제반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대해서는 금지와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명령통제식 규제보다는 소위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선호된다.³⁷⁾ 예컨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불법정보를 차단하게 하고, 정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만 통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자율규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³⁸⁾ 실제로, 유럽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불법 인터넷정보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1999년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 증진을 위한 다년간의 공동체 행동계획(Multiannual Community 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³⁹⁾ 2기 행동계획(2003-2004),⁴⁰⁾ 2005년

34) 이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한국 문헌으로는 이태희 (2010). <변화의 지향: 사상의 자유시장과 인터넷의 미래> 참조.

35) 헌재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36) 메갈리아를 일베의 남성혐오에 맞서서 여성들이 대항표현을 조직한 것이라고 보는 정희진 (2016. 7. 30.). 메갈리아는 일베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 <한겨레신문>, A3면 참조.

37) 전통적인 명령통제식 규제와 자율규제의 비교에 대해서는 홍성수 (2008).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권, 5면 이하 및 12면 이하 참조.

38) 자율규제는 특히 인터넷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Price and Verhulst (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in Watermann and Machill (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3-27면 및 133-198면; 황승흠 외 (2004). <인터넷 자율규제>; 황승흠 (2014).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참조.

“더 안전한 인터넷 플러스(Safer Internet Plus 2005-2008)” 프로그램,⁴¹⁾ 2008년 새로운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New Safer Internet programme 2009-2013)을 지지하는 보고서⁴²⁾ 등으로 이어진 유럽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그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접근은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세계의 주요 IT회사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와 함께 결성한 EU 인터넷 포럼에서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강령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인터넷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혐오표현⁴⁴⁾을 모니터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한 공적 약속의 성격을 갖는다.

2) 인터넷에 대한 현행 규제방법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규제방법들이 있다. 여기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임의적 임시조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4조의3),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25조 1항],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등이 있으며, 정

39) Decision No 276/19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anuary 1999.

40) Decision No 1151/200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June 2003.

41) Decision No 854/200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42)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self-regulation-better-internet-kids>; Proposal for a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43) 자세한 것은 Price and Verhulst (2005).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19면; 김유승 (2005).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6호, 83-118면; 김유승 (2006).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0호, 85-118면; 장우영 (2005). EU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4호, 3-33면 참조. 이러한 자율규제는 효율성, 유연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명령-통제식 규제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Baldwin et al. (1998). Introduction. in Baldwin et al. (ed). *A Reader on Regulation*, 28면], 특정한 몇몇 분야에서만 일부 성공 사례가 있을 뿐, 전통적인 규제를 대체하는 일반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44) 이 행동강령에서의 혐오표현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국적 또는 민족적 기원에 관련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의 공개적 선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제44조의 4)도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임시조치나 방심위의 행정심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문제가 있어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방법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혐오표현이야말로 다른 규제대상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규제 필요성도 있다. 다만 임시조치나 행정심의 대상에 혐오표현을 무작정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특별)형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심의회 경우 명백한 불법이 아닌 것들에까지 적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그래서 더더욱 엄밀한 법적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혐오표현이 일종의 집단 명예훼손(group defamat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⁴⁶⁾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각종 조치들은 혐오표현에도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때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⁴⁷⁾ 이 경우에도 혐오표현의 개념이 명확해야 일관성 있는 규율이 가능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역시 구체적인 법적 개념 없이 혐오표현을 함부로 규제한다면 또 다른 검열과 감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식으로든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5) 심우민 (2014). 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제1호.; 박경신 (2009).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중앙법학>, 통권 제33호.; 박경신 (2015). 인터넷 상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12. 2. 2011헌가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합헌결정.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지성우 (2012). SMART미디어시대 인터넷콘텐츠 심의의 규범적 문제점과 법제정비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3호.; 이재진·이정기 (2012). 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3호.; 박경신 (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황성기 (2005).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5호 등 참조.

46) 앞의 Waldron (2012). 제3장 참조.

47) 이러한 취지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20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취지 및 해설. <언론중재>, 통권 제137호, 78쪽 이하 참조.

V. 결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찬반 논의가 있지만, 더 이상 ‘불개입’이 선택지가 되긴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법 없이 혐오표현에 맞서자’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혐오표현을 방치하겠다는 입장은 헌법상 평등과 차별금지원칙과도 부합하기 어렵다. 다만, 규제 반대론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는 의미가 있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 대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혐오표현의 규제에는 형사범죄화, 민사구제, 차별시정, 형성적 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이것들을 단계별, 층위별,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혐오표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이버 공간에 특화된 여러 규제방법들, 예컨대, 자율규제나 행정규제, 분쟁조정 등이 - 개선의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 운용 중인데, 이들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적절히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표현 중 ‘중요선동’에 해당하는 것을 일차적인 법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 <페미니즘연구>, 제15권 제2호.
- 김유승 (2006).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0호.
- _____ (2005).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6호.
- 김재운 (2015).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 김지혜 (2015).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제64권 제9호.
- 박경신 (2015). 인터넷 상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12. 2. 2011헌가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합헌결정.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 _____ (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 _____ (2009).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중앙법학>, 통권 제33호.
- 심경수 (2007).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연구>, 제18권 1호.
- 심우민 (2014). 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제1호.
- 언론중재위원회 (20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취지 및 해설. <언론중재>, 통권 제137호.
- 이상경 (20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 이재승 (2010). <국가범죄>. 서울: 엘피.
- 이재진 (2000).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호.
- _____ (1999). 혐오언론(hate speech)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언론학보>, 19권.
- 이재진·이정기 (2012). 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3호.
-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138호.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우영 (2005). EU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4호.
- 조소영 (2004).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 대학내에서의 적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권. 서울: 박영사.

- _____ (2002).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공법연구>, 제30권 제4호.
- 지성우 (2012). SMART미디어시대 인터넷콘텐츠 심의의 규범적 문제점과 법제정비방안. <성균관 법학>, 제24권 제3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50호.
- _____ (2013). 제9장 법과 사회변동. 김명숙 외.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경기: 다산출판사.
- _____ (2010).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38호.
- 홍성수 (2008).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권.
- 황성기 (2005).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 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5호.
- 황승흠 (2014).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승흠 외 (2004). <인터넷 자율규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unstein (2010).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이정인 (역) (2011).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서울: 프리뷰.
- Sunstein (2009). *On rumors : how falsehoods spread, why we believe them, what can be do*. 이기동 (역) (2009). <루머: 인터넷시대에 던지는 新문명비판>. 서울: 프리뷰.
- Waldron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홍성수 · 이소영 (역) (2016 근간). <혐오표현의 해악>.

<서양문헌>

- ADL (2010). *From Responding to Cyberhate, Toolkit for Action*.
- Allpor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Basic Books.
- Baker (2012). Hate Speech in Consitutional Jurisprudence. in Herz and Moln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rcum (2005). Internet Hate Speech: The European Framework and the Emerging American Haven.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62(2).
- Baldwin et al. (1998). Introduction. in Baldwin et al. (ed). *A Reader on Regulation*. Oxford Scholarship Online.
- Banks (2011). European Regulation of cross-border hate speech in cyberspace, The Limits of legisl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19(1).
- Burnap and Williams (2015). Cyber Hate Speech on Twitter: An Application of Machine Classification and Statistical Modeling for Policy and Decision Making. *Policy & Internet* 7(2).
- Council of Europe (2012). *Mapping study on projects against hate speech online*.
- Delgado and Stefancic (1999). *Must We Defend Nazis?*. NYU Press.
- Dovidio et al. (2013).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in J. F. Dovidio et al. (ed). *The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SAGE Publications Ltd.

- Ehrlich et al. (1995). The Traumatic Impact of Ethnoviolence. in Lederer and Delgado (ed). *The Price We Pay*. Hill & Wang Pub.
- Farrior (1996). Molding the Matrix.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1).
- Foxman and Wolf (2013). *Viral Hate: Containing Its Spread on the Internet*. St. Martin's Press.
- Gagliardone et al (2015).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 Guyton (2013). Tweeting 'Fire' in a Crowded Theater: Distinguishing between Advocacy and Incitement in the Social Media World. *Mississippi Law Journal* 82(3).
- Julian Baumrin (2011). Internet Hat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Revisited. *Rutgers Computer and Technology Law Journal*.
- Keen and Georgescu (2016). *BOOKMARKS: A manual for combating hate speech online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of Europe. Revised edition.
- LaShel (2011). Hate Speech in Cyberspace: Bitterness without Boundaries.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 Mendel (2006).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Incitement to Genocide or Racial Hatred, for the UN Special Adviso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
- Nielsen (2012). Power in Public. in Maitra and McGowan (ed). *Speech & Harm*. Oxford University Press.
- Price and Verhulst (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in Watermann and Machill (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Verlag Bertelsmann Stiftung.
- Price and Verhulst (2005).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Kluwer Law International.
- Rosenfeld (2012).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Herz and Moln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ossen (2012).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Herz and Moln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rial (2015). Hate Speech and Distorted Communication. *Law and Philosophy* 34.
- Walker (1994). *Hate Speech*.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einstein (1999). *Hate Speech, Pornography, And Radical Attacks On Free Speech Doctrine*. Westview Press.